
Policy and Law Report _Vol.9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7.5 ~ 7.11) -

July 12,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법무부	<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p> <p>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별표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p>②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성·위험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가목)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상복합 및 전통시장은 제외 -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나목) 중 1·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배수펌프장 등은 제외 (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제외하되 일부를 포함) -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다목)은 화재 위험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모두 포함 -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라목)로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철도터널을 규정 <p>③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안 제4조, 제5조, 제10조~제1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예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적정 인력·예산, 점검 의무이행 등 규정 <p>④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제9조, 별표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 (교육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 (교육 방법)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 ※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 (과태료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 →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 →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 	2021-07-09

부처	내용	일시
	<p>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등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 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 (공표 방법)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 	
<p>산업통상 자원부 + 중소벤처 기업부</p>	<p>•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p> <p>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부는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2019년 1차 회의 이후 2년 반여 만에 재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대 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 물류난 해소 등에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검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현장 혁신)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디지털 전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서로 협조하고, 스마트제조·탄소중립·ESG 등 산업현장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함 ② (수출·판로) 물류난과 해외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물류 바우처 사업, 수출마케팅 등 협업방안을 논의함 ③ (업종별 협업과제) 뿌리산업, 반도체, 소부장, 유통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간 연계방안 논의 등이 있음. 	<p>2021-07-06</p>

부처	내용	일시									
중소벤처기업부	<p>•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 특화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p> <p>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7월 5일(월)부터 8월 4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힘</p> <p>지원금액은 탄소중립 스마트공장의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업당 7,000만원(기초), 2억원(고도화) 등 국비 총 30억원 예정임. 특히 고효율 설비 개체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투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융자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함</p> <p>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의 차별적인 지원방향은 ①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②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③ 고효율 설비 개체 등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 지원 등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패키지·원스톱 특화 지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2c4e64; color: white;"> ①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2c4e64; color: white;"> ②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2c4e64; color: white;"> ③ 고효율 설비 개체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Pool 활용 ▶ 전략수립 (컨설턴트+도입기업+공급기업)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루션(FEMS, MES 등) 및 이와 연계된 자동화 설비 ▶ 제어기(센서, PLC 등) ▶ 계측 인프라 (유량계, 전력량계등)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틸리티 및 연동 설비 (보일러, 공업로, 공기 조화설비, 압축기 등) </td> </tr> </table>	①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②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③ 고효율 설비 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Pool 활용 ▶ 전략수립 (컨설턴트+도입기업+공급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루션(FEMS, MES 등) 및 이와 연계된 자동화 설비 ▶ 제어기(센서, PLC 등) ▶ 계측 인프라 (유량계, 전력량계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틸리티 및 연동 설비 (보일러, 공업로, 공기 조화설비, 압축기 등) 	2021-07-05
①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②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③ 고효율 설비 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Pool 활용 ▶ 전략수립 (컨설턴트+도입기업+공급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루션(FEMS, MES 등) 및 이와 연계된 자동화 설비 ▶ 제어기(센서, PLC 등) ▶ 계측 인프라 (유량계, 전력량계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틸리티 및 연동 설비 (보일러, 공업로, 공기 조화설비, 압축기 등) 									
금융위원회	<p>•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p> <p>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7월 중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API* 의무화 시기) API 시스템 구축 후 충분한 사전 테스트 기간 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착을 위한 API 의무화 유예 필요성</p> <p style="padding-left: 20px;">*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p> <p>② (정보제공항목) 소비자 편의와 정보보호를 조화하여 적요정보(수취·송금인명, 이체메모) 등 금융 마이데이터 API 제공정보 확대 검토</p> <p>③ (소비자 보호)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가입현황 안내 및 알고하는 동의 등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p>	2021-07-07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p>•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시행</p> <p>금융위원회는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AI윤리원칙-AI전담조직-위험관리정책 수립의 3重 내부통제장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AI를 금융거래 및 대고객서비스에 적용한 쏠금융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융업이라도 AI 활용의 결과가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예 : 신용평가 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개발) 확대 적용 • (AI윤리) 금융회사는 회사별 가치, AI 활용 상황(고객군, 서비스 내용 등)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시 준수해야할 원칙·기준 수립 • (AI조직) AI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을 서비스 쏠단 계(기획·설계·운영·모니터링)에 걸쳐 구체적 정의 • (위험관리) AI 서비스 자체 평가·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개인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강화된 위험관리 적용 <p>② AI학습 데이터에 대한 조사·검증 강화,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p> <p>③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 등이 없도록 시스템 위험관리 및 공정성 제고</p> <p>④ 소비자에 AI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권리행사 보장 등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에게 AI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고,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의신청·민원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 등을 알기쉽게 안내 - 특히, AI를 통해 신용평가,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계약체결 여부 결정 등을 한 경우 ‘설명요구·정정요구권*’이 있음을 고지 <p>*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프로파일링(Profiling) 대응권’</p>	2021-07-08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국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16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p> <p>한편, 재난안전 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해당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1-07-06
환경부	<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인계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48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p> <p>이에 따라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의 운영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인계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p>	2021-07-0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고용 노동부	<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p> <p>종전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의 분리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p> <p>이에 따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p>	2021-07-06
국토 교통부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납부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납부액의 일부를 자치구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98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자치구 등에 대한 배분비율을 정함</p> <p>그리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1-07-06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기획재정부</p>	<p>• 「<u>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p> <p>'20. 6. 4. 발표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서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함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무의 범위 (안 § 20조의4), 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 (안 § 20조의5), 위탁방법 및 절차(안 § 20조의6) 등을 규정</p> <p>②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공제액 산정 방식 및 공제 적용 기간, 공제적 잔액 대비 공제 한도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 (안 § 21조의4② 내지 ③)</p> <p>③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등록·인가·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은행에 위탁 (안 § 21조의7④, 안 § 21조의11, 안 § 37조③13)</p> <p>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방법 개선요구,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등이 있음 (안 § 35조②)</p> <p>※ 의견제시기간 : 7/9(금)~8/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로 제출</p>	<p>2021-07-09</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 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9항이 신설('21.4.13 공포, '21.10.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업 등록 기준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기준 구체화 (안 제11조제7항 신설)</p> <p>②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과징금 부과 기준 설정 (안 제38조제4항 신설)</p> <p>③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위탁 근거 마련 및 냉매회수업의 보관시설의 보유 기준 완화 (안 제66조제9호의5 및 제9호의6 신설, 별표14의2 비고 제3호 신설) 등이 있음</p> <p>※ 의견제시기간 : 7/8(목)~8/1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대기관리과)로 제출</p>	2021-07-08
식품 의약품 안전처	<p>•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p> <p>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현행법에서는 세척제, 행굼보조제 및 일회용 컵 등의 일부 용품을 법률로 정하고 기타 위생용품의 일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위생용품을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분류별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p> <p>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위생용품 위생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p> <p>※ 의견제시기간 : 7/7(수)~8/1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p>	2021-07-0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 위원회	<p>•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2023년부터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험상품, 자산운용, 보험회계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선임계리사 제도 개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p> <p>①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 (안 제9조, 제25조의2, 제60조, 제63조, 제75조, 별표1, 별표9) - 보험회사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용어 변경</p> <p>②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제95조, 제96조) -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에 준해 강화 -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사항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 -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 -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개선</p> <p>③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제65조)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기준으로 지급여력금액을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p> <p>④ 재보험계약의 손상처리기준 변경 (제63조) -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재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규정</p> <p>⑤ 기초서류 상 책임준비금 명칭 변경 (제71조, 별표7) - 기초서류에 표기되는 책임준비금은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목적이므로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변경</p> <p>※ 의견제시기간 : 7/5(월)~8/1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p>	2021-07-05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5인)」</p> <p>최근 일부 기업이 기업결합 관련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일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종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를 비롯하여 해당 기업과 연관된 지역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p> <p>이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11조)</p>	2021-07-02
	<p>•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p> <p>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제3호 및 제71조제6호)</p>	2021-07-0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금융 위원회	<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0인)」</p> <p>소비자가 인터넷몰 등에 접속하거나 재화 등을 검색하는 경우 사이트에서 게재되는 재화 등의 배열순위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함</p> <p>이에 재화 등 상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표시하고, 조회수·판매량·상품가격 등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됨을 명시함.</p> <p>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거래가 이전보다 활발해진 가운데 국내 사업자에게만 현행법상 규제를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국외 사업자에게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리를 지키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역외적용 (안 제4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의무 (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이 거짓·과장된 정보를 게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③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사항 추가 (안 제13조제2항제11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다른 법률에 따른 재화 등의 판매와 관련된 허가·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④ 검색결과·광고 구분표시 및 검색순위 기준의 공개 (안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 등 상품의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표시하여야 하고, 조회수·판매량·상품가격 등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됨을 명시함. 	2021-07-0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금융 위원회	<p>⑤ 이용후기 수집·처리정보의 공개 (안 제20조의4제3항 및 제45조제4항제9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와 관련된 게시기간·삭제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p>⑥ 맞춤형 광고 여부의 표시와 일반적 검색결과·광고의 수신 선택 (안 제20조의5 및 제45조제4항제10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광고를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형태의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 시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되,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 <p>⑦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 (안 제20조의6,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2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매출액·이용자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결과 및 변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출액·이용자수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와 해당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2021-07-05
기획재정 위원회	<p>•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2인)」</p> <p>현행법은 가업상속 공제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적용하면서, 시행령에서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요건, 가업영위기간 및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중소기업법인의 경영자 27%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가 이미 우리 경제에 닥칠 현실이나, 과중한 세부담 등으로 인해 가업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비상장법인:50%→40%, 상장법인:30%→20%)하는 한편,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후관리의무기간(7년→5년)과 업종유지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3항 신설, 제18조제6항, 제18조제7항 단서 신설, 제18조제9항 등)</p>	2021-07-07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p> <p>급속히 변화·발전하는 ICT 생태계의 시장구조를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여 개별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에 따라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과 여부를 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음</p> <p>이에 원칙으로 돌아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그 손실부담의무를 부담하되, 사회적 영향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담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단순화하도록 함</p> <p>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영향력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보편적 역무 제도의 본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p>	2021-07-02
	<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1인)」</p> <p>현재 유료방송사업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사업별로 전송방식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전송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함. 전송기술의 선택과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어렵고,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p> <p>이에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4 신설)</p>	2021-07-0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보건복지 위원회	<p>•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p> <p>최근 의약품에서 의약품 성분의 자체적인 분해·결합으로 발암 우려 물질이 생성·혼입되거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암 우려 물질이 의약품에 생성·혼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나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p> <p>따라서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 없이 위해가 우려되는 불순물이 의약품에 혼입된 경우 국가·의료기관 및 약국·제약업계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의 고의·과실 없이 위해가 우려되는 불순물이 의약품에 혼입되는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관련 비용보상 부담금을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하도록 함 (안 제 86조의9부터 제86조의12까지 신설)</p>	2021-07-05
환경노동 위원회	<p>•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p> <p>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급상황·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미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p> <p>이에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 54조의2 신설 등)</p>	2021-07-02
환경노동 위원회	<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p> <p>실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자원순환보증금이 용기·1회용 컵의 반환을 통한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등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보증금의 재활용 촉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p>	2021-07-0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23인)」</p> <p>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화염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여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p> <p>따라서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함 (안 제49조 및 제84조)</p>	2021-07-02
국토교통 위원회	<p>•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24인)」</p> <p>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위험성, 화재하중 등 적재 물품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p> <p>따라서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안 제21조의10 신설)</p>	2021-07-02
	<p>•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p> <p>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 중 붕괴되어 17명의 인명피해가 가졌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하도급을 통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p> <p>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불법하도급 등 제8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에서 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며,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29조의3 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83조제7호)</p>	2021-07-07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7/16(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47호 발간	
국회도서관	7/15(목) 10:00	국회도서관, 이대통번역대학원, 한국법제연구원 공동국제세미나 - 통번역 윤리와 전문가정신	온라인 비대면
	7/15(목)	국외 현안리포트 발간 - 자율주행차(AV) 규제의 발전 방향: 대량 보급의 장애 요소	국회 도서관
	7/16(금)~	「인공지능과 예술 II : Flower」전시 - 인공지능과 예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전시모델 개발	국회 도서관
예산정책처	7/13(화) 09:30	2021 NABO 예산정책 심포지엄 -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 개최	실시간 온라인
	주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입법조사처	7/13(화)	NARS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별첨1] 제389회국회(7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7/13(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및 심사·의결, 법안상정
기재위	7/13(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7/13(화) 14:00	경제재정소위	법안심사
	7/14(수) 10:00	조세소위	법안심사
	7/15(목) 10:00	예결소위	추경안 심사
	7/16(금) 10:00	전체회의	추경안 및 법안의결
행안위	7/13(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심사 등
	7/13(화) 15:00	예결소위	추경안 심사
	7/14(수) 14:00	전체회의	추경안 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문체위	7/13(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7/15(목) 10:00	예결소위	추경안 심사
	7/16(금)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농해수위	7/13(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7/14(수) 14:00	예결소위	추경안 심사
	7/15(목) 09:00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산자위	7/13(화) 14:0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7/14(수) 10:00	예결소위	추경안 심사
	7/15(목)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복지위	7/13(화) 09:30	전체회의	법안의결 및 추경안 심사
	7/13(화) 13:30	예결소위	추경안 심사
	7/13(화) 17:40	전체회의	추경안 심사
환노위	7/14(수) 14:00	환경법안심사소위	법안의결 및 추경안 상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7/15(목) 14:00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추경안 심사
국토위	7/12(월) 14:00	국토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7/13(화) 10:00	전체회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7/13(화) 11:00	예산소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7/13(화) 14:00	전체회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정보위	7/16(금) 14:00	전체회의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 심사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12(월) 10:00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 청년기본자산법 재정안 논의	이용우, 김성주, 이탄희, 장경태 의원실 외	이용우TV 생중계
7/12(월) 10:00	지방분권 강화 정책 토론회	양기대 의원실	이룸센터 누리홀
7/13(화) 10:30	게임 섯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허은아 의원실	유튜브 생중계
7/13(화) 13:00	자회사 임금실태 및 영향요인 조사보고서 결과 발표 국회토론회	강은미, 장혜영 의원실	이룸센터 교육실1
7/14(수) 10:00	경기도, 플랫폼 공정경제 국회토론회	강득구 의원실, 경기도 외	글래드호텔 A홀
7/14(수) 14:00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형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	윤준병 의원실	켄싱턴호텔 15층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5(월) 10:00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토론회	오기형, 김승원, 김용민, 유정주 의원실 외	오기형TV 생중계
7/5(월) 13:30	혁신인가? 착취인가? -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이동주, 우원식, 이학영, 진성준 의원실 외	중소기업 중앙회 2층
7/5(월) 14:00	물류센터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	오영환 의원실	의원회관 306호
7/6(화) 10:00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 소득세 · 법인세 · 상증세에 부가세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과 부가가치세의 누진성 도입 모색 을 중심으로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외	정의당TV 생중계
7/6(화) 10:00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 작 지원 방안 포럼	이상헌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글래드호텔 B홀
7/6(화) 10:00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강득구, 강민정 의원실, 경기도 외	글래드호텔 A홀
7/9(금) 10:00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최혜영, 김민석 의원실	김민석TV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희훈** | 소속변호사 T. 02-316-7917 E. hhpar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